

# EU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에 관한 고찰\*

김 세 환

영남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 < 목 차 >

- I. 서
- II. EU 반덤핑법의 내용과 무역구제조치 현황
- III. 반덤핑조치의 일반적 발동 요건
- IV. 반덤핑조치의 특별 발동 요건  
: 반덤핑조치가 공동체 이익에 부합할 것
- V. 결론

## I. 서

EU 반덤핑법상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픽의 존재, 피해의 발생, 덤픽과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 세 가지의 기본요건 외에 또 하나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본규칙(Basic Regulation) 1225/2009 제7조 1항, 제 9조 4항 그리고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이익’이다. 즉 기본규칙 제7조 1항은 잠정 반덤핑조치의 부과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9조 4항은 확정 반덤핑조치의 부과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잠정 혹은 확정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 외에 EU가 특별히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이익 심사(Community Interest Test)이다.

이러한 EU의 공동체 이익 테스트는 그 모범이라 할 수 있는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독특한 제도로서, WTO 반덤핑협정 제6.12조와 제9.1조 등에서 요구하는 공익조항의 적용여부는 완전히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이익의 의무적인 적용을 요하는 EU의 규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투고일 : 2013.5.12, 완료일 : 2013.6.3, 계재확정일 : 2013.6.12

1996년 구 기본규칙 384/96에 의해 도입된 EU의 공동체 이익 조항은 덤핑으로 인해 공동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이익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사 절차는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이익 테스트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공동체 이익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임에는 틀림없다. 대서양 양식연어(Farmed Atlantic salmon) 사례에서 공동체 이익 테스트의 목적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보다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훨씬 중요하고도 압도적인 공동체이익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고,<sup>2)</sup> 공동체기관의 공동체 이익 측정방법의 선택에 관해서 일반법원(CFI)이 아파치 신발(Apache Footwear)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대변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형량하는 방법에 관한 재량을 공동체기관에 부여하고 있다”<sup>3)</sup>고 하여 추상적인 공동체이익의 측정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공동체기관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EU 합금철무역협회(European ferro-alloys trade association; Euroalliages) 사건에서 일반법원은 “제9조 4항 및 제21조에 규정된 공동체 이익 테스트는 반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할 지에 관해서 결정하는 일몰재심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sup>4)</sup>고 언급하면서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공동체이익을 확인하였다.<sup>5)</sup>

- 
- 2) Council Regulation (EC) No 930/2003 of 26 May 2003 terminating 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y proceedings concerning imports of farmed Atlantic salmon originating in Norway and the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farmed Atlantic salmon originating in Chile and the Faeroe Islands, 2003, OJ (L 133)1, 34.
  - 3) Case T-1/07, General Court (Eighth Chamber), 2009, Apache Footwear Ltd and Apache II Footwear Ltd (Qingxin)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ara 111;...Article 21 of the basic regulation grants the institutions a discretion as to the methods for analysing and weighting the various interests represented by concerned parties who have submitted comments in that regard.
  - 4) T 132/01, Euroalliages and Others v Commission para 42; (Consequently, the Community interest requirement, provided for in Article 9(4) and Article 21 of the basic regulation,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uring a review when deciding whether to retain measures that are due to expire)
  - 5) 같은 취지로 다음 사례를 참고; C -142/84,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and R. J. Reynolds Industries Inc.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94; C -179/87,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10 March 1992, Sharp Corporation v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56-60; T -35/92, John Deere Lt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그러나 구 반덤핑법 384/96에서 도입된 공동체이익 조항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제21조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루투칼, 그리스의 심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우회덤핑방지조항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양보를 얻어내고 나서야 규정된 타협의 산물이었으며,<sup>6)</sup> 두 번째로 공동체 전체 이익의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산정, 특히 소비자와 소매판매자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sup>7)</sup> 집행위원회는 이해당사자 누구라도 반덤핑조치의 실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위원회는 증거제출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왔고, 또한 이해당사자 다수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모호하고 불합리하다는(ambiguous and unreasonable) 이유를 들어 배척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EU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고찰하기 이전에 EU 반덤핑법의 내용과 EU의 전반적인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현황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난 뒤, EU의 반덤핑조치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을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누어 고찰하되 일반요건은 WTO 협정상 반덤핑조치와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특별요건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고찰하기로 한다.

## II. EU 반덤핑법의 내용과 무역구제조치 현황

### 1. EU 반덤핑법의 내용 : 규칙 1225/2009 및 182/2011

EU는 2009년 반덤핑법<sup>8)</sup>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반보조금 조치(Subsidies and

---

(Second Chamber) of 27 October 1994 para.94; T -2/95, Industrie des Poudres Sphériques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ifth Chamber, extended composition) of 15 October 1998, para.49; T -210/95, European Fertiliz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FM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ara. 67; T -188/99, Euroalliages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37.

6) Van Bael & Bellis, EU Anti-Dumping and Other Trade Defence Instruments, 5th ed. 2011, p. 11.

7) 특히 갑피(甲皮) 있는 신발(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에서 문제가 되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1, 31-34 참조.

8) EU 반덤핑법의 직접적 법원은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07조(구 TEC 제133조)이다. 구 유럽공

Countervailing Measures)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하였다. 구 기본규칙 384/96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현행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sup>9)</sup>은 전문 34개항 및 본문 24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I은 구 기본규칙 384/96의 개정된 연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sup>10)</sup> 부속서 II는 구 기본규칙 384/96과 현행 기본규칙과의 조문 대조표이다. 현행 기본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본규칙도 구 기본규칙 384/96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본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이익 조항의 적용 의무화,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규정을 공동체내 조립공정에 사용된 부품의 수입에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이며 구 기본규칙과 다른 내용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소덤핑(de minimis) 규정과 비시장경제국 규정 등이 있다.

한편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은 전문 22개항과 본문 1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 규칙이 2011년 3월 1일에 발효됨으로써 공동체의 반덤핑법에 관한 법적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칙은 기본규칙 1225/2009 제15조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데, 우선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 182/2011의 전문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집행권능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밝히면서,<sup>11)</sup>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는 집행권의 성격과 영향에 따라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 또는 검토절차(examination procedure) 중 하나의 절차를 택해서 행사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토절차가

동체조약(TEC) 제133조 제1항<sup>12)</sup>에서는 “특히 관세율 변경, 관세 및 무역 관련 협정 체결, 무역자유화조치의 통일성 유지, 수출정책, 덤플 및 보조금교부시 취해지는 무역보호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근거해 공동통상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덤핑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행위원회는 공동통상정책 실행수단에 관한 제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반덤핑법의 집행기관도 규정하는 등 반덤핑조치의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현재의 리스본조약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07조 제2항에서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는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에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9 OJ(L 343)51(동규칙의 오류정정본은 2010년에 나왔다; Corrigendum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2010(L 7)22.
- 10) 부속서 I에서는 기본규칙 384/96은 각료회의 규칙 2331/96, 각료회의 규칙905/98, 2238/2000, 각료회의 규칙 1972/2002, 각료회의 규칙 461/2004, 각료회의 규칙 2117/2005 등으로 총 6차례의 추가 개정이 있은 후 현재의 기본규칙으로 전면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11) Regulation (EU) No 182/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전문 (4) 및 제1조.

반덤핑조치 또는 상계관세조치시에 채택될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회내 반대의견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고,<sup>12)</sup> 또한 예외적인 사항에 있어서 자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집행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잠정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전에 잠정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를 제출하지 않고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sup>

## 2. EU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무역구제조치란 특정 물품의 덤피ング수입, 외국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련 물품의 수입관세에 추가해서 덤피ング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 등을 제한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조치, 반보조금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먼저 반덤핑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반덤핑조사가 개시되면 과반수 이상의 사례에서 확정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었으며 가격인상 수락은 거의 없었다.<sup>15)</sup> 2012년에 있어서는 27건의 신규 반덤핑조사 중 23건에서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가격인상수락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sup>16)</sup>

EU의 반덤핑조치 대상 국가는 이전에는 일본이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발효중인 반덤핑조치는 110건이며,<sup>17)</sup> 가격인상 수락은 6개국에서 6개의 수입품에 대해 시행 중에 있다.<sup>18)</sup> 현재 반덤핑조치의 대상

12) Regulation (EU) No 182/2011, 전문(13), 제2조에서는 검토절차에 속하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프로그램의 채택, 공동 농업 및 어업정책, 환경, 보호 및 안전 또는 인간과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 공동통상정책, 세제 등에 있어서 집행위원회의 집행권 행사는 검토절차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13) Regulation (EU) No 182/2011, 제7조 전단; 예외적인 상황이란 농업에 있어서 시장의 붕괴나 유럽연합운영조약(TFEU)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유럽연합운영조약 제3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연합의 재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기행위 및 기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를 말한다.

14) Regulation (EU) No 182/2011, 제8조; 동 조치의 효력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면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5)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2012, p.2-3.

16) ibid.

17) 이에 반해 상계관세조치는 10건에 불과하다.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58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4건, 말레이시아 6건, 러시아 4건, 대만 5건, 태국 6건, 우크라이나 4건, 미국 3건이며 한국은 현재 3건<sup>19)</sup>에서 반덤핑조치를 부과받고 있다.<sup>20)</sup>

표 1. 반덤핑 및 반보조금 신규 조사(2006년-2012년 8월까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월)
당해연도 총 신규조사	36	9	20	21	18	21	13
- 확정관세 부과/가격인상 수락	13	12	16	11	9	13	2
-조사 종결(제소 철회, de minimis dumping or injury 등)	18	10	3	11	10	11	8
감정조치 부과	13	12	5	10	13	10	4
기간경과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멸된 조치	9	18	2	4	14	21	4

(출처 :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2006 – 2012(Aug.)에서 재구성)

두 번째로 EU의 반보조금 조치(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sup>21)</sup> 2004년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 38개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인도가 가장 많은 조사대상국이었다. 2007년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보조금 분야에서는 총 21건의 반보조금조치가 행해졌다.<sup>22)</sup>

표 2. 반덤핑 및 반보조금 재심(Reviews)(2006년-2012년 8월까지)

구 分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월)
당해연도 총 재심	36	41	23	34	31	24	28
- 확정/수정/부과/연장 등	43	34	27	29	28	22	18
- 종결(반덤핑조치)	19	13	10	4	2	15	10

(출처 :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2006 – 2012(Aug.)에서 재구성)

18)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2012, Annex O.

19) 3건의 상품은 Silicon metal, Steel ropes and cables,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이며 모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20)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2012, p.5.

21) Council Regulation (EEC) No 3017/79 of 20 December 197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79 OJ (L 339) 1.

22)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7-2012.

세 번째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살펴보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2년 이래 단 6회만이 실시되었으며, 2012년 8월 31일 현재 실시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고 단지 우선감시조치를 취하는 강철제품(Steel products) 사례 1건이 있을 뿐이다.<sup>23)</sup>

상기에서 살펴 보았듯이 EU의 무역규제조치는 반덤핑조치에 집중되어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반보조금 조사에서는 공동체 산업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관행을 입증해야 하지만, 반덤핑 조사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공동체산업이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덤픽의 주장을 할 수가 있으므로 절차상 유리하고,<sup>24)</sup> 덤픽과 피해의 존재 및 덤픽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도 집행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각료회의 규칙 260/2009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또한 각료회의 규칙 625/2009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체 생산자에 ‘중대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할 또는 야기할 위협이 될 특정의 조건하에 상품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대하여야 회원국의 요구나 발의로 집행위원회가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다고 판정하면 발동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에 비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조건이 훨씬 어렵다.<sup>25)</sup> 그러므로 공동체 당국이나 공동체 산업은 입증이 훨씬 어려운 반보조금 조치나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입증 또는 주장이 훨씬 쉬운 반덤핑 조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III. 반덤핑조치의 일반적 발동 요건

보통 반덤핑조치의 부과 요건은 덤픽의 존재, 피해의 발생, 덤픽과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 세 가지인데 EU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난 뒤 비로소 공동체이익 조항이 발동되므로 덤픽의 존재, 피해의 발생, 덤픽과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공동체 이익 테스트가 행해지기 위한 선결 요건이 된다.

23)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12, p. 72.

24) 이에 반해 반보조금(anti subsidy) 조치의 절차에 있어서는 집행위원회는 거의 완전히 입증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조사를 개시하지도 아니하며, 상계관세조치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non-selective basis)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공동체 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발동되어진다.

25)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Council Regulations 260/2009 제16조1항 및 제17조(Council Regulations 625/2009 제15조 1항과 제16조 1항)은 WTO 반덤핑협정 제4조 1항 및 GATT 제19조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 1. 덤픽의 존재

덤픽이란 수출국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덤픽 중 GATT 및 WTO가 규율하는 것은 가격 덤픽에 한정된다. 즉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거한 비가격덤픽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수출가격이 동종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아야

기본규칙 1225/2009 제1조 2항은 WTO 반덤핑협정을 따라서 “덤픽이란 공동체로 수출된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설정된 정상거래과정에서 동종상품과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sup>26)</sup>고 규정하고 있다. 즉 덤픽은 어떤 상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낮다면 그 상품은 덤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2) 정상가격

덤픽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독립된 소비자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지불하거나 지불 가능한 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동종상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정상가격은 다른 판매자 또는 생산자의 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제휴 또는 서로 보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간 가격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증되지 않는 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 3) 수출가격

덤픽 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출가격은 상품이 공동체로 수출품으로 판매된 때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 가능한 가격이다. 수출가격이 없거나, 그 가격이 담합으로 정해졌거나, 수출자와 수입자 간 또는 수출자와 제3자간 보상약정(compensatory arrangement)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26) 기본규칙 1225/2009 제1조 2항 :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if its export price to the Community is less than a comparable price for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s established for the exporting country.

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이 사용된다.

#### 4) 공정한 비교

덤핑마진은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실제 반덤핑관세가 수입 품에 부과될 때는 결정된 덤픽마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수입관세의 추가 관세 형태로 부과된다. 이러한 덤픽마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비교는 동일한 교역 단계에서의 판매와 가능한 한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그리고 가격의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피해의 존재

덤핑의 사실만으로는 반덤핑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덤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덤픽수입품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공동체산업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 (material retardation)을 초래한 경우이다.<sup>27)</sup> 즉 공동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해야 한다.

기본규칙 1225/2009 제3조 제2항에서는 피해결정을 할 때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 해야 하고 덤픽 상품의 수량과 공동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가격에 끼치는 효과 및 덤픽 상품으로 인해 동종 상품의 공동체산업에 끼치는 효과에 관해 객관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28)</sup>

---

27) 기본규칙 1225/2009 제3조 1항.

28) 기본규칙 1225/2009 제3조 2항은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를 따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래는 기본규칙 및 WTO 반덤핑협정의 원문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Article VI of GATT 1994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기본규칙 1225/2009 제3조 2항 : A determination of injury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shall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Community market for like products;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ose imports on the Community industry.

### 3.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의 존재

수입 상품의 덤핑 판매와 국내산업의 피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덤핑된 상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sup>29)</sup> 덤핑된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는 덤핑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의 요인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덤핑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증명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엑스트라메트 사건(Extramet Industrie v Council case)이 있다.<sup>30)</sup>

## IV. 반덤핑조치의 특별 발동 요건 : 반덤핑조치가 공동체 이익에 부합할 것

### 1. 의의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덤핑 및 피해가 존재해야 하고

29)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Council Regulation 1225/2009 제3조.

30) 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tramet사는 칼슘금속(calcium metal)을 제처리해 야금산업에 사용되는 순수칼슘과립(purified calcium granules)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및 소련산 칼슘금속 최대 수입업자이기도 하였는데, 동사는 이 원료를 프랑스의 Péchiney 사에서도 구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료들의 공동체시장내 유일한 공급자이기도 한 Péchiney사는 Extramet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Extramet사는 프랑스 당국에 경쟁법 위반으로 Péchiney사를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Péchiney사는 EC 위원회에 덤핑위반으로 제소하였고 최종적으로 각료회의는 Extramet사의 중국산 원료에 대해서는 21.8%, 그리고 소련산 원료에 대해서는 2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Council Regulation (EEC) No 2808/89 of 18 September 198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alcium metal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and definitively collecting the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imposed on such imports, 1989 OJ (L 271)1). 그리하여 Extramet사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각료회의 규칙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Extramet사는 동 소송에서 '동종 상품'의 정의, 정상가격의 산정,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의 인정, 공동체 이익에 대한 평가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오류를 주장하였는데 이 중 특히 공동체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체 생산업자인 Péchiney사가 스스로 Extramet사에 대한 원료의 공급거절로 인해 공동체산업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self-inflicted injury in refusing to supply calcium metal to it) 이는 덤핑 이외의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tramet사는 무효의 판결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각료회의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처분 신청도 하였으나 효력정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동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Case C-358/89, Extramet Industrie v Council(11 June 1992), paras 6-19).

덤핑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상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일반적으로 같다. 그런데 EU에서는 이러한 요건 이외에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반덤핑조치의 공동체이익 부합성이다. 이 공동체이익 부합성이야말로 다른 WTO 회원국 반덤핑법과는 구별되는 EU만의 특이한 제도이며, 기존 단일국가 내지 연방국가와는 다른 국가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EU만의 독특한 제도이자 EU만이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27개 회원국<sup>31)</sup>으로 구성되어 있는 EU는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EU 영역 내에 산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산업 및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EU는 이러한 공익 조항을 통하여 EU의 창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이익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공동체 이익 테스트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례별로 추상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서양 양식연어(Farmed Atlantic salmon) 사례에서 공동체기관은 공동체이익 테스트의 목적은 덤프ing으로 인한 피해보다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훨씬 중요하고도 압도적인 공동체이익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무엇이 혹은 어떠한 것이 '훨씬 중요하고도 압도적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sup>32)</sup> 아파치 신발(Apache Footwear) 사건에서는 일반법원(CFI)이 추상적인 공동체이익의 측정 방법에 관한 재량권을 공동체기관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 이익 테스트가 오히려 추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sup>33)</sup> 한편 EU 합금철무역협회(European ferro-alloys trade association; Euroalliages) 사건에서 일반법원은 공동체이익 심사가 일몰재심시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공동체 이익 심사가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확인하였으며<sup>34)</sup>, 이 외 다수의 사례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sup>35)</sup>

31) EU와 크로아티아간 가입 조약에 따라 EU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면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에 EU에 가입하게 되며 그 때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될 것이다.

32) Council Regulation (EC) No 930/2003, OJ (L 133)1, 34 참조.

33) Case T-1/07, Apache Footwear Ltd and Apache II Footwear Ltd (Qingxin)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ara 111 참조.

34) T 132/01, Euroalliages and Others v Commission para 42 참조.

35) 같은 취지로 다음 사례를 참고; C -142/84,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and R. J. Reynolds Industries Inc.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94; C -179/87,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10 March 1992, Sharp Corporation v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56-60; T -35/92, John Deere Lt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구체적 사례에서 공동체 기관이 들고 있는 반덤핑조치의 공동체이익 부합성 요건은 대체로 네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첫째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공동체 시장의 무역왜곡효과의 시정 및 효과적인 경쟁 회복에 부합하여야 하고, 셋째로는 공동체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에 부합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이익의 평가 기간이 당해 조사기간 동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공동체 이익의 부합성 평가

### 1)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

기본규칙 제21조는 제7조 또는 제9조와 달리 오로지 공동체 이익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이익의 기본조항이다. 우선 동법 제21조 1항 1문은 공동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공동체 이익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공동체 산업, 사용자, 소비자 등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이익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sup>36)</sup>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sup>37)</sup> 이러한 이해당사자에게는 집행위원회에

---

(Second Chamber) of 27 October 1994 para.94; T -2/95, Industrie des Poudres Sphériques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ifth Chamber, extended composition) of 15 October 1998, para.49; T -210/95, European Fertiliz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FMA)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ara. 67; T -188/99, Euroalliages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ara. 37.

- 36) 기본규칙 1225/2009 제21조 제1항 첫 번째 문장;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Community interest calls for intervention shall be based on an appreciation of all the various interests taken as a whole, including the interests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users and consumers; and a determina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only be made where all parties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views known pursuant to paragraph 2.
- 37) 이전에 규정된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반덤핑조사 제소자(complaints), 수입업자(importers), 수출업자(exporters), 수출국의 대표(representatives of the exporting country) 였다.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이익을 고려할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제6조 7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수출국 대표 뿐만 아니라 제5조 10항에 따라 스스로를 표명한 제소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그들의 대표협회,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는 조사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The complainants, importers and exporters and their representative associations, users and consumer organizations, which have made themselves know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10),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upon

스스로를 알릴 권리, 정보를 제출할 권리, 타방에 의해 제출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청문을 요구할 권리, 잠정조치의 부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타방이 표명한 의견에 대응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다.<sup>38)</sup> 그러므로 사용자와 소비자 단체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

한편 기본규칙 제21조에서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출업자는 공동체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반덤핑조치의 직접적인 부과 대상이므로 방어권 등 수출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조사절차에 대해 규정한 제6조 제7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39)</sup> 또한 제20조에 규정된 정보의 공표에 대한 사항은 공동체 이익에 관한 제21조 규정과는 성격이 틀리므로 수출업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현행법하에서는 공동체이익에 대해 대변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의 견해는 전체의 공동체 이익 논의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데<sup>40)</sup> 이 경우에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sup>41)</sup>

---

written request, inspect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any party to an investigation...) ; 또한 동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열거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관련 상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도 포함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1, recital 279; ... While this list is not exhaustive (in some investigations, suppliers of the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 concerned have also made comments and these comments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38) 기본규칙 1225/2009 제5조 10항 및 제6조 5항.

39) Joined cases T-33/98 and T-34/98, Petrotub SA & Republica SA v Council, paras 203-204 참조.

40)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1, 31.

41) Council Regulation (EC) No 63/2008 of 21 January 2008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dihydromyrcenol originating in India, 2008 OJ(L 23)1, 5; ... Nevertheless, according to Article 21(2) of the basic Regulation, these parties are normally not concerned by the Community interest analysis and their comments may be disregarded, in particular when they are not supported by any factual evidence;

## 2) 무역왜곡효과의 시정 및 효과적인 경쟁의 회복에 대한 고려

EU 반덤핑법 기본규칙 제21조 1항 2문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평가할 때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해를 주는 덤플의 무역왜곡효과를 없앨 필요성과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단순히 동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부터 견지되어온 공동체 당국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43)</sup> 또한 2문은 다소 상반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덤플으로 인한 무역왜곡효과를 바로잡는 것과 효율적인 경쟁을 회복하는 것은 그 목적이 상반되기 때문이다.<sup>44)</sup> 경쟁법 차원에서는 가격의 인하는 통상의 경쟁행위이기 때문에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45)</sup> 즉 기업이 정상적으로 행하는 가격차별 정책은 경쟁법적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왜곡효과를 없애는 반덤핑법적 요소와 효과적인 경쟁을 회복하는 경쟁법적 요소를 동시에 규정한 제21조 2문의 규정은 매우 혼란스러운 규정임에 틀림없다. 또한 국내dump이 경쟁법에 위임된 반면 국제dump은 GATT와 WTO의 규제로 규율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수입국은 국산품에는 경쟁법을 적용하고 수입품에는 반덤핑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 3) 공동체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

공동체기관은 제21조에서 규정된 공동체 이익의 분석은 경제적 분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갑피달린 신발 사례<sup>47)</sup>에서 공동체기관은 “공동체 이익의

42) In such an examination, the need to eliminate the trade distorting effects of injurious dumping and to restore effective competition shall be given special consideration. Measures,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dumping and injury found, may not be applied where the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can 'clearly' conclude that it is not in the Community interest to apply such measures.

43) 실제로 많은 사례를 분석하면 공동체 이익 조항은 공동체 당국의 반덤핑조치의 부과여부에 대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두 내용이 마치 동의어인양 한 문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매우 이상한 일이다.

45) 고무로 노리오, 박재형 역, 앞의 책, p. 295; EU의 경쟁법에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정이 있다.

46) *ibid.*

47)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분석이 정치 외교적 분석이 아니며,<sup>48)</sup>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경제적 분석이고,<sup>49)</sup> 이것 이 결코 대외정책을 행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며 그것은 제21조에 열거된 당사자의 범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sup>50)</sup>고 설파한 바 있다.

기본규칙 제21조 3문에서는 비록 덤팡과 덤팡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에 반한다면 당국은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sup>51)</sup>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명백히(clearly)’ 공동체이익에 반한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제소자의 이익(complainants' interest) 즉 공동체산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동체산업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는 공동체

---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 1.

- 48) 또한 공동체 당국은 반덤핑조치의 부과가 중국 및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과 EU와의 호의적인 경제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Finally, both considerations are not 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 rules-based instrument and a quasi-judicial investigation); ibid, 34.
- 49) 또한 경제적 분석은 환경적 관심사에도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Council Regulation (EC) No 893/2008 of 10 September 2008 maintaining the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polyester staple fibres originating in Belaru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udi Arabia and Korea following a partial interim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3) of Regulation (EC) No 384/96, 2008 OJ(L 247)1, para 80; ... replacement of Community production by dumped imports, in particular from the PRC and Korea, would increase carbon emissions and set back the EU climate change objectives. In this context it is in any event recalled that the Community interest analysis in anti-dumping proceedings focuses on the economic impact of measures on the economic operators concerned and is not directl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cerns.
- 50)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 1, para. 279; ... The Community interest analysis is an economic analysis focussing on the economic impact of taking/not taking anti-dumping measures on operators within the Community. It is not a tool by which antidumping investigations can be instrumentalised for general political considerations relating to foreign policy, development policy etc. This is also confirmed by the list of parties which have standing under Article 21 of the basic Regulation.
- 51) 기본규칙 제21조 3문 : Measures,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dumping and injury found, may not be applied where the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can clearly conclude that it is not in the Community interest to apply such measures.

당국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이익의 기준이 비로소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공동체 당국이 반덤핑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해당사자의 구제의 형태나 범위를 결정할 때에 또는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이다. 상기의 갑피달린 신발 사례<sup>52)</sup>에서 공동체기관은 “공동체 이익 분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이익의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가지 모델의 비용/편익 분석방법이 있을 수 없고 특히 적절한 시간에 각 요소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sup>53)</sup>이라고 하면서 제21조 1항을 언급한다. 즉 공동체기관은 공동체 이익 분석이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산업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목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기관은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피해가 없다’거나 반덤핑조치가 ‘피해를 경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 때에만 비로소 공동체 이익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공동체기관의 공동체이익 평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다. 이전의 보고서에서 공동체 이익을 평가할 때에 나타난 공동체기관의 경향을 보면 공동체 이익의 평가를 지극히 형식적인 선에서 행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동체기관의 공동체이익의 평가는 매우 실제적이고도 자세한 방법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폐로 실리콘(Ferro Silicon) 사례<sup>54)</sup>에

- 
- 52)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uppers of leath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2006, OJ (L 275) 1.
  - 53) ibid.; it follows clearly from the types of parties mentioned that only the economic effects on parties within the Community are at stake in this test. At the same time, the Community interest test is not 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strict sense. While the various interests are put in balance, they are not weighed against each other in a mathematical equation, not least because of obvious methodological difficulties in quantifying each factor with a reasonable margin of security within the time available, and because there is not just one generally accepted model for a cost-benefit analysis.
  - 5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7 of 28 August 2007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ferro-silicon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gypt, Kazakh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and Russia, 2007 OJ(L 223)1, 20-22; 이 외에 Council Regulation (EC) No 261/2008 of 17 March 2008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compressor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OJ(L 81)1;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42/2008 of 4 July 2008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prepared or preserved citrus fruits (namely mandarins, etc.)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OJ(L 178)1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87/2009 of 7

서는 공동체 이익을 다루는 부분에서 공동체 이익의 근거 조문과 조사를 행한 공동체 이익의 평가대상을 자세히 나열하고 난 뒤, 공동체산업의 이익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생산자, 원료공급업자, 사용자와 수입업자 및 공동체에서의 경쟁과 무역 왜곡효과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페로 실리콘(Ferro Silicon) 사례 이전에는 대서양 양식연어 사례(Farmed Atlantic salmon)<sup>55)</sup>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동 사례는 소비자 및 사용자의 이익이 완전히 인정된 매우 드문 사례인 바,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동체 이익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공동체 이익의 평가를 단순히 과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에 의해 평가하려는 공동체 당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 4) 공동체이익의 평가 기간

공동체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간은 당해 조사기간 동안에 한한다. 당해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절차개시 직전의 6개월을 포함하여야 한다.<sup>56)</sup> 냉동딸기(Frozen Strawberries) 사례에서 한 이해당사자가 2005년도의 수입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2005년도는 조사기간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체 기관은 기본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사기간은 조사개시전 적어도 6개 월의 기간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상기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57)</sup> 그러나 2005년도의 특수한 상황이 덤팡 및 피해의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포함되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sup>58)</sup>

---

April 2009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aluminium foil originating in Armenia, Brazil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OJ(94)17 등 참조

55) Council Regulation (EC) No 930/2003 of 26 May 2003 terminating the anti-dumping and anti-subsidy proceedings concerning imports of farmed Atlantic salmon originating in Norway and the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farmed Atlantic salmon originating in Chile and the Faeroe Islands, 2003(OJ 133)1, 29-35.

56) 기본규칙 1225/2009, 제6조 제1항.

57) Council Regulation (EC) No 407/2007 of 16 April 2007 imposing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and releasing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rozen strawberrie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OJ(L 100) 1, 2.

58) ibid; 채택된 조사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덤팡과 피해에 대

한편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이전의 사항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변화되면 동 기간도 반덤핑조사에서 고려된다. 예를 들면 감귤류 과일사례 (Certain prepared or preserved citrus fruits)<sup>59)</sup>에서 조사기간 이후 10달간 중국으로부터 74,000톤에 달한 감귤이 저가로 수입된 것을 수입량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포함시켰다.<sup>60)</sup>

## V. 결론

현재의 EU 반덤핑조사는 공동체산업의 이익에 편중된 평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덤픽의 존재,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정은 집행위원회가 하고 있으나 반덤핑조치로부터 입계되는 피해의 입증책임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갑피달린 신발 사례에서 솔직히 시인하였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반덤핑조치의 부과는 경쟁을 저해하고 공동체 산업에 사실상의 독점을 용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대체공급 원이 존재하므로 반덤핑조치의 수준(또는 수출업자의 시장 지위)은 반덤핑조치의 대상국가에게 공동체 시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또 한편으로는 반덤핑조치의 목적은 수출업자의 공동체시장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의해 왜곡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복구하는 것이라고도 한다.<sup>61)</sup>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없는 공동체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반덤핑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매우 많다.<sup>62)</sup> 그리하여 공동체 기관의 반덤핑조치로 인해서 공

---

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 채택된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였다.

- 5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42/2008 of 4 July 2008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prepared or preserved citrus fruits (namely mandarins, etc.)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OJ(L 178)19,24
- 60) 이 외 조사기간 이후의 자료와 정보가 고려된 경우로 구연산(Citric acid) 사례 등이 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193/2008 of 1 December 2008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ies imposed on imports of citric acid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OJ(L 323)1, 10.
- 61) Council Regulation (EC) No 1331/2007 of 13 November 200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dicyandiamide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OJ(L 296)1, para 107.
- 6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7/2008, monosodium glutamate, 2008 OJ(L 322)1, para 59; Council Regulation (EC) No 1371/2005, 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2005 OJ(L 223)1, paras 168-170;

동체 산업만으로 형성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종국에는 이러한 반덤핑조치의 부과가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하자 일몰재심에서 이러한 반덤핑조치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로 다시금 제21조의 공동체 이익 조항을 들기도 한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 사례가 있다.<sup>63)</sup> 그리고 공동체 산업의 이익에 편중되어 공동체이익 평가가 행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는 사례로는 스테인레스 스틸 사례<sup>64)</sup>를 포함해 아주 많은 실례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 산업의 경쟁력 감소를 메우기 위한 반덤핑조치는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해외 생산자들이 매우 자주 비판하는 근거이다. D램 사례<sup>65)</sup>에서 보듯이 당시 EU는 실질적 피해의 인정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산업 발전의 자체로 인해서도 반덤핑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결국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로 인해 현재 EU에서 D램을 생산하는 기업은 없게 되었다. 당시 이 반덤핑조치로 혜택을 입게 된 업체는 3개 기업이었으나 현재 그 기업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EU가 반덤핑조치의 특별 발동요건으로 공동체 이익 조항을 도입한 이유는 다른 WTO 회원국과는 달리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EU 영역 내에 산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산업 및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동체 기관이 공동체 산업의 이익에 치중되어 동 조항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기관은 실질적인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63) Council Regulation (EC) No 969/2000, potassium chloride, 2000 OJ(L 112)4, paras 123–125; Council Regulation (EC) No 1050/2006, potassium chloride, 2006 OJ(L 191)1, paras 152–169.

6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17/1999 of 23 March 1999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wires with a diameter of 1 mm or more originating in India, 1999 OJ(L 79)13, paras 27,76.

65)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165/90 of 23 January 1990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types of electronic microcircuits known as drams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originating in Japan, accepting undertakings offered by certain exporters in connection with the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these products and terminating the investigation in their respect, 1990 OJ(L 20)5.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1. 단행본

- 고무로 노리오, 박재형 옮김, 국제경제법, 일조각, 2010.  
김두수, EU 공동시장법, 초판,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I), 법영사, 2007.  
박덕영 & 이재형,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2010.  
변재웅 · 이로리 공저, EU통상정책 특수문제 연구 I, 2012.  
이환규, WTO 반덤핑제도, 성문당, 2007.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 [외국문헌]

#### 1. 단행본

- Adadzi, Ferdinand,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 strengthening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VDM Verlag, 2011.  
Andersen, Henrik, EU Dumping determinations and WOT law (Global Trade Law seri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 2. 자료

-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Official Journal, C 115.  
European Commission. 2006. Accompanying document to the 25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munity'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1,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1.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2,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2.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3,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3.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4,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4.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5,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5.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6,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6.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7,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7.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8,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8.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09,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09.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10,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10.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11,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11.
- Statistics Covering The Year 2012, European Commission Interim report 2012.
- COM(2007)479, final.
- COM(2008)877, final.
- COM(2009)573, final.
- COM(2010)558 final.
- COM(2011)82 final.
- COM(2012)59, final.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29/2008 of 14 November 2008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pre- and post-stressing wires and wire strands of non-alloy steel (PSC wires and strand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30/2008 of 14 November 2008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candles, tapers and the like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87/2009 of 7 April 2009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aluminium foil originating in Armenia, Brazil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mission Decision of 6 February 2009 terminating the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certain hot-dipped metallic-coated iron or steel flat-rolled produc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mission Decision of 24 February 2010 terminating the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certain ring binder mechanisms

originating in Thailand, 2010 OJ(L 48)17, paras 97–98, 10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09/2004 of 19 May 2004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graphite electrode systems originating in India.

Verordnung (EWG) Nr. 459/68 des Rates vom 5. April 1968 über den Schutz gegen Praktiken von Dumping, Prämien oder Subventionen aus nicht zu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gehörenden Ländern.

Council Regulation (EC) No 461/2004 of 8 March 2004 amending Regulation (EC) No 384/9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Regulation (EC) No 2026/9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Council Regulation (EC) No 1212/2005 of 25 July 2005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casting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Regulation (EC) No 1136/2006 of 24 July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lever arch mechanism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Regulation (EC) No 451/2007 of 23 April 2007 terminating the partial interim review of the anti-dumping measures applicable to imports of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Regulation (EC) No 452/2007 of 23 April 200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ironing board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Ukraine.

Council Regulation (EC) No 1279/2007 of 30 October 200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certain iron or steel ropes and cables originat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pealing th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iron or steel ropes and cables originating in Thailand and Turkey.

Council Regulation (EC) No 1355/2008 of 18 December 2008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prepared or preserved citrus fruits (namely mandarins, etc.)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Regulation (EC) No 91/2009 of 26 January 200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rrigendum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57/2011 of 10 May 2011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melamine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se T-188/99, Euroalliages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ond Chamber, extended composition) of 20 June 2001.

Case T-132/01, Euroalliages, Pechiney électrométallurgie, Vargön Alloys AB and Ferroatlántica, SL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ond Chamber, extended composition) of 8 July 2003.

Case T-249/06, Interpipe Nikopolsky Seamless Tubes Plant Niko Tube ZAT (Interpipe Niko Tube ZAT) and Interpipe Nizhnedneprovsky Tube Rolling Plant VAT (Interpipe NTRP VAT)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econd Chamber) of 10 March 2009.

Case T-1/07, General Court (Eighth Chamber), 2009, Apache Footwear Ltd and Apache II Footwear Ltd (Qingxin)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Eighth Chamber) of 9 December 2009.

[Abstract]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aking a Measure in the EU Anti-Dumping Law

– focused on the Community Interest Clause –

Kim, Se-Hwan

Doctor of Laws

The formation of EU itself is the process to conciliate and adjust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interests. Article 21 of the Basic Regulation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a public interest test both in terms of procedural requirements and substantive criteria. Community Interest in the EU anti dumping law is core provision ballancing various interests between the EU and the other countries which arise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among the Community actors. And the Community interest test is the clause which European Constitutional spirit is melted in, which only the European Community as a complexity of various different interests can have. Among the WTO-plus characterizations of the EU anti-dumping law, the implementation of a public interest test, namely the Community interest test in anti dumping law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EU system. This test makes the EU the only WTO Member that consistently applies the public interest test in an systematic way and has considerably restricted the use of anti dumping measures in order to balance the interests of various economic actors.

The Community Institutions does not quantify the interest of each economic factor in the process of weighting different interests due to methodological difficulties. Hence these interests are not weighed against each other in a mathematical equation and the assessment of Community

interest is not 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strict sense. So the Community Institutions enjoy a large degree of discretion to conduct a qualitative appreciation instead of a quantitative analysis.

The Community Institutions(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have been implementing this constitutional spirit, namely Community interest clause unfairly to secure the community industries' interest.

The Community's value and object are impaired by Community's own Institutions through the Community Institutions' acts without due considerations for other economic actors, that is to say users, consumers, retailers and so on.

It is simple to solve this Community Institutions' abuse of discretion. It is to establish the clearer criteria. So if does, the Community Institutions' abuse of discretion is minimized through this clearer criteria.

Key words : The Lisbon Treaty, EU anti dumping law, Community interest, lesser, duty rule, Council Regulation 1225/2009